

예산총칙

2025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553,122,797	16,593,684
일반회계		547,862,432	16,435,873
특별회계		5,260,365	157,811
	기타특별회계	5,260,365	157,811
	지하수관리특별회계	66,570	1,997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47,530	7,426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	74,939	2,248
	주차장특별회계	4,277,941	128,338
	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	593,385	17,802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34,082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(1) 기준인건비 (2) 재해대책비